천 안 삼룡 1 지 구 ○ ○ 아 파 트지 구 단 위 계 획 수 립 지 침

2018. 09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지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『천안 삼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』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·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당해 구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개발·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, 대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,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 결정도에 표시 된 내용을 설명하고,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침의 적용범위)

본 지침은 『천안 삼룡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』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지침의 구성)

본 지침은 제1장 총칙, 제2장 공동주택용지·근린생활시설용지, 제3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으로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됨

제 4 조 (지침적용의 기본원칙)

- ①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나 천안시 관련조례에 따른다.
- ② 지침서의 규제내용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규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를 우선한다.

제 5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"지구단위계획구역"이라 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1조에 의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.
- "허용용도"라 함은 그 필지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하며,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 서라도 불허용도로의 건축행위는 불가하다.
- 3. "불허용도"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본 지침에 의해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는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.
- 4. "건축한계선"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.

- 5. "건축물 전면"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.
- 6. "최고층수"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.
- 7. "용적률"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(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을 말한다.
- 8. "건폐율"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(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한다)의 비율을 말한다.
- 9. "차량출입 불허구간"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
-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.

제 2 장 공동주택용지·근린생활시설용지

제 1 조 (건축물의 용도)

- ① 공동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공사관련 가설건축물로 한정한다.
- ② 근린생활시설용지 허용용도는 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로 한정한다.
- ③ 불허용도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다.
- ④ 도면표시

허용	용용도
불	허용도

제 2 조 (건축물의 건폐율)

-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.
- ② 공통주택용지의 건폐율은 25% 이하로 한다.
- ③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% 이하로 한다.
- ④ 도면표시

건 폐 율	

제 3 조 (건축물의 용적률)

-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천안시 도시계 획조례」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
- ②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은 240% 이하로 한다.
-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1-2BL의 용적률은 240% 이하로 하고, 1-3BL은 존치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임을 고려하여 용적률은 200% 이하로 한다.
- ④ 도면표시

용 적 률	

제 4 조 (건축물의 높이)

- ① 공동주택용지 내 높이는 건축물의 층수로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, 본 공동주택용지에서는 최저층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, 최고층수는 25층 이하로 한다.
- ②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높이는 건축물의 층수로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,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1-2BL의 최저층수는 2층 이상, 최고층수는 6층 이하로 하고, 1-3BL의 최저층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최고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.
- ③ 도면표시

최 고 층 수

제 5 조 (건축물의 배치)

- ①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은 획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지양한다.
- ②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남향으로 배치를 권장한다.
-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한다.
- ④ 건축물은 보행동선과 연계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.

제 6 조 (건축물의 형태)

- ① 공동주택의 지붕은 기하학적형태의 지붕이 되도록 권장하고, 비상시 최상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- ② 공동주택 한 동에 복도식과 계단식을 혼합하는 것을 지양하되, 불가피 할 경우 복도식과 계단식의 입면을 적절히 조화할 것을 권장한다.
-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전통디자인의 건축구조를 권장한다.

제 7 조 (건축물의 색채)

- ① 공동주택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, 주조색은 채도 4미만, 보조색은 채도 6 이하로 계획한다.
- ② 공동주택의 색채는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하고 다양한 종류를 배제한다.
-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주조색은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, 강조색을 제외하고 원색의 사용을 금한다.
- ④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색체는 「천안시 기본경관계획」 상 색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전통적인 색체를 권장한다.
- ⑤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재료특유의 색채를 권장한다.

제 8 조 (건축물의 건축한계선)

- ① 공동주택용지는 아파트 주동에 한하여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로부터 6m로 하고, 대로 3-2호선변에 한하여 2m로 한다.
- ①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로부터 2m로 한다.

제 9 조 (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)

- ① 공동주택단지의 녹지면적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, 녹지에서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.
- ② 옹벽 또는 방음벽(투시형과 디자인이 우수한 방음벽은 제외) 등 구조물은 담쟁이 넝쿨 등을 식재하여 입면차폐 녹화를 하도록 한다.
- ③ 공동주택단지 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% 이상으로 한다.
- ④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조경면적은 「천안시 건축조례」 규정에 의해 최소 대지면적의 5%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.
- ⑤ 입면녹화를 위하여 발코니에 포트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.

제 10 조 (차량의 진출입에 관한 사항)

- ① 차량출입구의 위치 등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허용구간으로 표시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도면표시

차량진출입 허용구간

제 11 조 (단지 내 보행자 도로에 관한 사항)

- ① 보행자 동선은 안전하고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고 보·차도 분리포장 등 보행자의 전용공간이 확보되도록 한다.
- ② 단지 내부 도로는 십자교차로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주차를 위한 동선을 가급적 짧게 한다.
- ③ 단지 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한다.

제 12 조 (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)

① 「주차장법」및 「천안시 주차장조례」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또는 교통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

제 1 조 (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)

- ①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.
- 1.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
- 2.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
- 3.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

제 2 조 (지구단위계획의 변경)

- 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변경사유를 검토한 후 「천안시 도시계획조례」에 의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및「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」의 경미한 변경사항 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- ①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고시 이후 관련법 및 조례의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